

市民局長	尹丙汝
都市整備局長	林東南
建設局長	朴吉同
保健所長	金永浩
總務課長	李春基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11. 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10. 25.
홍성환의원외 7인
- 나. 회부일자 : 1994. 10. 27.
- 다. 상정일자 : 제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4.11.3.)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성환의원)

가. 제출이유

-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법률 제4741호) 및 19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17호)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라진 제규정들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감사기간이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안 제2조)
-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 제3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 감사대상사무를 마포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에서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며”로 개정(안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법률 제4741호)제36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14317호)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과 달라진 제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이 종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되었고,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감사대상사무에 있어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범위내에서 행하던 것을 동개정조례(안)에서는 마포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사무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사무의 범위 확대 규정되었음.
- 동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2/3이상을 차지하고 핵심적 내용이 개정되는 등 일부 개정보다는 전부 개정방식이 보다 더 효율적인 개정방식이라 사료되며, 감사기간의 연장이나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감사대상사무의 범위 확대등은 현행규정보다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주민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증대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340
번 호	

발의연월일: 1994. 10.

발의자: 흥성환의원

의 7인

1. 개정이유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법률 제4741호) 및 19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17호)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라진 제규정들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정주요골자

- 감사기간이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 (안 제2조)
-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조, 제3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신설 (안 제5조제1항제5호)
- 감사대상사무를 마포구청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

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에서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며”로 개정(안 제8조제1항)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감사) ①의회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 중 7일 이내에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市民局長	尹丙汝
都市整備局長	林東南
建設局長	朴吉同
保健所長	金永浩
總務課長	李春基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11. 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10. 25.
홍성환의원의 7인
- 나. 회부일자 : 1994. 10. 27.
- 다. 상정일자 : 제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4.11.3.)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성환의원)

가. 제출이유

-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법률 제4741호) 및 19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17호)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달라진 규정들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감사기간이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안 제2조)
-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를 행할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 제3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 감사대상사무를 마포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에서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며”로 개정(안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법률 제4741호)제36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14317호)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과 달라진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이 종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되었고,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감사대상사무에 있어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범위내에서 행하던 것을 동개정조례(안)에서는 마포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사무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사무의 범위가 확대 규정되었음.
- 동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2/3이상을 차지하고 핵심적 내용이 개정되는 등 일부 개정보다는 전부 개정방식이 보다 더 효율적인 개정방식이라 사료되며, 감사기간의 연장이나 본회의에서도 감사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감사대상사무의 범위 확대등은 현행규정보다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주민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

③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④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자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 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께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

부행정기관

3. 마포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마포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마포구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마포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마포구청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대하여도 국회와 서울특별시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마포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서울특별시의 회가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위원회등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 활동기

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마포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 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17조의7 규정에 의한 제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17조의8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위원회조례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1. 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10. 25.

김상열의원의 7인

나. 회부일자 : 1994. 10. 27.

다. 상정일자 : 제2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4.11.3)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김상열 의원)

가. 제출이유

- 19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17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규정과 달라진 검사위원의 정수등 선임방법과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회운영 및 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
- 검사위원의 자격을 종전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제2호)
- 검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정부투자기관, 금융 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의 직에 있던 자”등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